2025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25. 2월 시행 예정)	p.1
2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25. 2월 시행 예정)	p.2
3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25. 2월 시행 예정)	p.3
4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25. 2월 시행 예정)	p.4
5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25. 1. 1. 시행)	p.5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25. 1. 1. 시행)	p.6
7 일시수출입 특수차량 신고인 확대('25. 6. 1. 시행 예정)	p.7
8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25. 2월 시행 예정)	p.8
9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25. 1. 1. 시행)	p.9
1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확대('25. 1. 1. 시행)	p.10
11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25. 1. 1. 시행)	p.11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2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25. 1. 1. 시행)	p.12
13 수입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확대('25. 1. 1. 시행)	p.13
14 부정행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25. 1. 1. 시행)	p.14
15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25. 1. 1. 시행)	p.15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6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25. 1. 1. 시행)	p.16
17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25. 1. 1. 시행)	p.17
18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25. 1. 1. 시행)	p.18

1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 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제29조의2)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	□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
• (대상) 견본품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사 례 〉

개정전	• 자율관리보세공장 S사는 **연구용품·시제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 시 **수입통관**을 거쳐야 해서 **연구·개발·검증 지체** 및 **제조 공정 지연**
개정후	•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물품 반출입이 간소화되면서 **시험·연구,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 대응**이 **빨라짐**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

□ **【기대효과】**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

□ **【시행일】**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2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15km 이내 → 30km 이내)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제7조) * 동일업체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충족	□ 거리제한 완화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 제조·가공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	• <현행과 같음>
• 직선거리 15km 이내	• 직선거리 30km 이내

〈 사 례 〉

개정전	• H조선사는 신규 공장 증설이 필요하나,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포화로 가용 부지가 부족해 **기존 보세공장과 15km 이내**에 **신규 공장 증설 불가능**
개정후	•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이 **30km 이내로 완화**됨에 따라, H조선사는 부근 산업단지에 **제2공장을 신축**하여 **기존 보세공장의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대효과】** 단일보세공장 **증설 용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물류이동**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가공 기간 단축**

□ **【시행일】**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개정)

3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제36조)	□ 지정요건 완화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보세사 채용 • ERP 등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 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가 보안 등의 사유로 열람 권한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관 직원이 업체 방문을 통한 열람 요구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사 례 〉

개정전	• K방산업체 A사는 보안문제로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할 수 없어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 불가능**
개정후	• K방산업체 A사는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대신 세관직원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협조에 동의**함으로써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이 가능해짐

□ **【기대효과】**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아 **업무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시행일】**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개정)

4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잉여물품의 재고관리(제33조)	□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잉여물품의 재고관리 방법 완화
• <신설>	• 다음 각 호의 잉여물품에 대해 내·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관 또는 반출입 허용 - 설계도면 등에 의해 정확한 손모중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卑金屬) 원재료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서 기본 관세율이 0%인 것 (설계손모량에 따라 중량 관리) - 원재료·제품에 전용된 후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운반용품·용기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내·외국 원재료의 혼용 중량 비율에 따라 중량 관리)

〈 사 례 〉

개정전	• 보세공장 H조선사는 원재료 포장박스와 절단작업 후 발생하는 철강 스크랩의 수입통관을 위해 각각 **별도 장소에 내·외국물품을 구분 보관**하면서, 전 공정에서 **내·외국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 옴
개정후	• 이번 규제혁신으로 한 장소에서 **내·외국 구분없이 통합 보관·관리**하고 **설계손모량** 등에 따른 **중량으로 수입신고**함에 따라 **공간활용,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생산 속도도 향상됨**

□ **【기대효과】**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내·외국 구분 관리 부담 해소**로 **작업 효율성 향상**, **인건비 절감**, 공간활용, 신속 제조 가능

□ **【시행일】**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개정)

⑤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

(원산지검증과, 042-481-320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 ○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 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 ○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 (**협정**) 한-EFTA FTA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대상**) 「FTA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대상 항목 7개에 대해 협정과 관계없이 전체 신청가능하도록 허용

〈 사 례 〉

개정전	• 국내기업 A사는 스위스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통관하며 한-EFTA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고 싶었으나, **해당 협정에는 원산지 사전심사가 규정되지 않아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함**
개정후	• 한-EFTA FTA에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A사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스위스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이 **한-EFTA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가능**

□ **【기대효과】**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법적안정성 제고

□ **【시행일】** '25. 1. 1.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개정)

⑥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제155조)	□ 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외국물품	• <현행과 같음>
•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	• 삭제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탄 1000톤을 평택항과 인천항에 각각 500톤씩 분할 하역하려고 내국운송신고를 하였으며, 내국운송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 규정으로 인해 최초 하역항인 평택항에서 **화물 전량을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인천항 하역 물량을 국제무역선에 **다시 적재**
개정후	• A사는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된 석탄 중 최초 하역항인 평택항에서 **500톤을 하역하고 출항**한 후 인천항에서 **나머지 500톤을 하역**

□ **【기대효과】** 내국운송 절차를 간소화로 물류비용 절감

□ **【시행일】** '25. 1. 1. 시행(「관세법」 개정)

7 일시수출입 특수차량 신고인 확대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일시수출입 차량 신고인(제5조제2항)	□ 신고인 확대
•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 하는 화주	• 수출입 하는 화주·관세사·통관취급법인 등으로 확대

〈 사 례 〉

개정전	• 부산 소재의 반도체 제조기업 S사는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설비 수입 시 무진동 특수차량을 이용**, 차량 일시수출입 신고 시 **화주 직접신고만 가능**하여 **신고 불편** 및 **통관 지연** 발생
개정후	• 부산 소재의 반도체 제조기업 S사는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설비 수입 시 무진동 특수차량을 이용**, **A관세사**에게 차량 일시수출입 **신고 위탁**으로 **신고 편의** 및 **신속 통관**으로 **물류비 절감**

□ **【기대효과】** 신고 편의 개선 및 신속 통관으로 물류비 절감에 기여

□ **【시행일】** '25. 6. 1. 시행 예정(「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8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공장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요건(제30조)	□ 보세운송 특례요건 완화
• 동일법인 보세공장 간 반출입물품 •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반출입물품 - 최근 3개월의 해당 업체 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법규준수도 우수 보세공장의 반출입물품 - 최근 3개월동안 해당 업체가 관세법 또는 FTZ법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반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송치된 이력이 없는 경우

〈 사 례 〉

개정전	• 반도체 보세공장 E사는 우수업체임에도 보세운송 횟수가 적은 일부 신규 거래업체와 보세운송 시에는 **자동수리 되지 않아 물류지체 발생**
개정후	• **특례요건 완화로** 신규 거래업체와 보세운송할 때도 **즉시 특례적용**을 받게 되어, **주말이나 야간**에 **신속한 반출입** 및 **원재료 적기 투입**이 **가능**해짐

□ **【기대효과】** 보세공장 간 원재료 반출입 신속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물류이동**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가공 기간 단축**

□ **【시행일】**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개정)

⑨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기업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조사 중지(훈령 제36조)	□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 관세조사 중지 시 중지 횟수에 관계 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

□ **【기대효과】**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

□ **【시행일】** '25. 1. 1. 시행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

⑩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796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율 적용 ○ 【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 【예외】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 (좌 동)
< 신 설 >	○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

〈 사 례 〉

개정전	• S사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불가
개정후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S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수정신고 한 날부터 45일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

□ **【기대효과】**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시행일】** '25. 1. 1.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개정)

⓫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796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RCEP 원산지증명 방식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RCEP 원산지증명 방식 추가 (좌 동)
< 신 설 >	○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대상 회원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 사 례 〉

개정전	• 일본에 신발을 수출하는 S사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개정후	• 일본에 신발을 수출하는 S사는 수출자 스스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여 일본 수입자에게 제공

□ **【기대효과】**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시행일】** '25. 1. 1.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의2 신설)

⑫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제177조) • 외국물품 : 1년 범위 + 1년 연장 可 • 내국물품 : 1년 범위	□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 <현행과 같음> •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 사 례 〉

개정전	• B사는 냉동 육류를 수입·유통하는 회사로 냉동창고 1곳을 특허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허 보세창고 내 여유공간에 냉동 조기 등 내국물품도 함께 보관 보관하고 있음,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므로 냉동조기를 **1년마다** 다른 냉동창고로 **반출 후 재장치**하는 사례 발생
개정후	• B사는 내국물품의 냉동조기 등 장기 장치 수요가 있는 냉동물품을 보세창고 반출 없이 장치기간 연장 신고만으로 **계속 장치** 가능

□ **【기대효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물류산업 지원

□ **【시행일】** '25. 1. 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관세법」 개정)

⓭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86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 •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 (**예외**) 부정행위의 경우 10년 <추 가>	□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 <현행과 같음>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7년**

□ **【기대효과】** 수입 무신고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관세부과의 실효성 제고

○ **【시행일】** '25. 1. 1. 시행(「관세법」 제21조 개정)

⓮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심사정책과, 042-481-786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가산세율 상향
• (**원칙**) 부족세액의 10%	<현행과 같음>
- (**예외**) 부정 과소신고*시 40%	- **부족세액의 40 → 60%**
* ① 허위증명·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현행과 같음>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 **해당 관세액의 40 → 60%**

□ **【기대효과】**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제고

○ **【시행일】** '25. 1. 1. 시행(「관세법」 제42조 개정)

⓯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

(조사총괄과, 042-481-79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과세자료 제출기관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회사 등으로 규정 (제264조의2)	□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
< 신 설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과세자료 :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

□ **【기대효과】**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시행일】** '25. 1. 1. 시행(「관세법」 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별표 3 개정 예정)

⑯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조사총괄과, 042-481-781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제한 (제235조)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 < 신 설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 **【기대효과】** 지식재산권 등(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 가능

□ **【시행일】** '25. 1. 1. 시행(「관세법」 제235조 개정)

⑰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

(조사총괄과, 042-481-79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가격조작죄의 벌금 기준은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제270조의2)	□ 가격조작죄의 벌금 기준에 '신고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을 추가
• 아래 중에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5천만원 - 물품원가	• 아래 중에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5천만원 - 물품원가 -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

〈 사 례 〉

- 1억원으로 가격 신고시 벌금 비교

물품가격(원가)	조작차액	⇨	개정전 벌금	VS.	개정후 벌금
7천만원	3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 **【기대효과】**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보조금·투자금 편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 **【시행일】** '25. 1. 1. 시행(「관세법」 제270조의2 개정)

⑱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조사총괄과, 042-481-781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 및 처벌 내용(제275조의3)	□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처벌 대상 < 신 설 >	• 처벌 대상 - 타인명의 사용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
• 처벌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 형량 - 타인명의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신의 명의사용 허락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대효과】**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해외직구에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

□ **【시행일】** '25. 1. 1. 시행(「관세법」 제275조의3 개정)